

항목: 학생

발행: 2012-08-15

번호: A-701

주제: 학교 보건 서비스

페이지: 1 중 1

변경 사항 개요

본 규정은 2009년 6월 29일자 규정 A-701을 대체한다.

변경 사항:

- 연락정보 갱신

개요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청은 뉴욕시 현장 및 뉴욕시 보건법에 의거해 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뉴욕시 교육청은 뉴욕주 교육법, 뉴욕주 공중 보건법 및 뉴욕시 보건법에 의거하여 학교 보건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본 규정은 이러한 법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한다.

I. 배경

A. 학교 보건 프로그램

1. 학교 보건 프로그램은 학생 교육 및 발달을 지원한다.
2. 학생 개개인에게 특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뉴욕시 교육청("DOE")과 보건 및 정신위생청("DOHMH")의 공동 의무이다.
3. 학교 보건 담당실 ("OSH")은 DOE와 DOHMH의 공동 프로그램으로서 이 두 부서는 학교 보건 프로그램과 정책, 절차를 개발하고 모니터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

B. 학생 건강 기록

1. 학생 건강 기록은 학교 보건 서비스 제공자 측에 지속적인 학생의 건강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 보건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학생의 웰빙과 학습에 영향을 줄만한 중요한 건강 문제에 관해 교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학생 건강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a. ATS (Automate the Schools)에 속한 정보, 교육청에 의해 관리되는 학생 고유의 컴퓨터 시스템 정보, 여기에는 예방접종, 결핵반응검사, 시력/청력 검사, 보건 서비스, 504항 계획, 건강 경고 및 의료보험 적용범위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 b. CH 205 양식 - 아동 및 청소년 건강 검진 양식 (구양식 211S을 대체한 신규 건강검진).
 - c. 103S 양식 - 학교에서 매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가 보관하는 학교 의료 기록, DOHMH 학생 종합 건강 기록.
 - d. 104S 양식 - 누적 건강 기록, 학급 교사의 관찰, 기본 검사 및 기타 특별한 건강 정보를 기록한 교육청 기록.
 - e. OSH 자동 학생 건강 기록("ASHR"), 학교 양호교사 및 기타 학교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입력한 ATS 데이터 정보.
 - f. 예방접종 증명 및 기타 학생의 예방접종과 관련된 기록.
2. 정보 접근
 - a. 학생 건강 기록은 기밀 서류로 분류된다.
 - b. OSH 직원은 학생의 학교 활동 참여에 영향을 줄만한 건강정보나 특정한 건강 관련요건에 부합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학교장 및 기타 관련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의료기록 기밀보장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II. 건강 검진

A. 신체 검사

1. 신입생

- a. 공립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입학 1년 이내에 의료 면허 소지자(의사, 간호사, 또는 의사가 보증한 의료보조인)에 의한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 i. 유아원에 처음 입학하는 신입생은 반드시 자신의 주치의가 작성한 CH 205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이 양식은 등록 후 가능한 빨리 제출한다. 또한 K-12 학년의 신입생 역시 CH 205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같은 학교 유치원으로 진학하는 유아원 학생들도 유치원 진학시 신규 CH 205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 b. 학생이 건강검진 기록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등교를 거부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일 학생의 부모가¹ 건강검진 기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DOHMH 소속 학교 보건과의 뉴욕시 보건법 제 49.05 항에 의거해 학생을 검진하고 CH 205 양식을 작성한다. 이 때 학부모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통지하고, 건강검진에 참여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학부모 부재시에는 DOHMH에서 지명한 보호자나 학교장/대리인이 학생의 신체검사에 반드시 합석해야 한다.

2. 연례 신체 검사

각 학교는 미국 소아과학회의 권고에 따라 학생들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도록 권장해야 한다. DOHMH 직원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a. 신장 및 체중

학생들은 매 학년도마다 반드시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여 기록해야 한다. 이것은 학급 담임이나 체육교사(NYC 피트니스그램 측정 절차의 일환으로서)가 실시하되 학생의 프라이버시 및 정확한 측정결과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측정 결과는 교사의 학급 건강 기록(104S 양식)에 기재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체육교사나 학교장 대리인에 의해 NYC FITNESSGRAM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 입력되어야 한다. 양호교사(school nurse)가 있는 학교에서는 이 결과를 OSH 기록(103S 양식)에도 기재한다. NYC FITNESSGRAM 결과는 각 학생의 체질량 지수(BMI)를 산출하는데 사용하며, 그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통보한다.

b. 구강 보건

모든 신입생 및 5, 7, 10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이 강력히 권고된다.

3. 특수 상황

a. 특수교육 평가

특수교육 위원회에서는 학생의 초기 평가의 일환으로 학부모의 동의 하에 전년도에 행해진 학생의 종합 건강검진 기록을 입수해야 한다. 해당될 경우, 이러한 건강 검진 기록에는 시력 및/또는 청력 검사도 포함되어야 한다.

¹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학부모”란 용어는, 학생의 부모(들), 보호자(들), 학생과 부모 관계나 법적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학생이 18세 이상이거나 독립한 미성년자일 경우 학생 본인을 의미한다.

b. 교내 스포츠

- i. 교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에 앞서, 학생은 반드시 신체검사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ii. 의사, 간호사, 또는 의료보조인은 반드시 학생을 검진하고, 이 학생이 공립 학교 체육 리그("PSAL") 규정에 의거해 훈련을 하거나 스포츠 경기에 안전하게 참가하는 데 지장이 될만한 신체 상태가 없다는 사실을 DOE 교내 스포츠 신체 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매년 새로운 검진이 요구된다.
- iii. 만일 학생이 자신의 주치의로부터 이러한 신체검사를 받기가 불가능할 경우 DOHMH 소속 학교 보건과의 학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때 학부모에게 반드시 서면상의 신체검사 동의서를 제공해야 한다. 학부모가 신체검사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DOHMH에서 지명한 보호자나 학교장/대리인이 학생의 신체검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의사는 신체검사 결과를 반드시 DOE에서 지정한 교내 스포츠 신체검사 양식에 기록해야 한다.

B. 시력 및 청력 검사

1. 시력 검사

- a. 뉴욕시 공립학교에 신규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입학 육(6) 개월 이내에 반드시 시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유아원, 유치원 및 1, 3, 5학년 학생들도 반드시 시력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직원은 학생의 시력검사를 학교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고, 학생의 학교 생활에 지장을 줄만한 시력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시력검사를 강력히 권고할 수 있다.
- b. 검사 실시
 - i. DOHMH 팀은 유아원, 유치원 및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실시한다. 학교장은 기타 학년의 모든 학생들 및 DOHMH로부터 검사를 받지 않은 기타 모든 학생들도 시력검사를 하였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 ii. OSH에서는 각 학교에 시력검사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교직원을 연수하는데 노력한다.
 - iii. 학교장은 학교에서 실시한 시력검사 (DOHMH에서 실시한 것이 아님) 결과가 ATS에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
- c. 학교에서 시력검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검사를 실시한다: 원시 및 근시. DOHMH 시력검사에는 근시와 원시 외에도 융합(유아원, 유치원 및 1학년)과 색맹 (신입생에 국한)검사를 포함할 수 있다.
- d. 통보
 - i. 모든 시력검사 결과 및 후속조치에 관한 안내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력검사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할 경우, 학부모들에게는 자녀를 안과(검안의 또는 안과의)에 데려갈 것을 권장하는 통지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는 DOHMH E-12S 양식을 제공하여 안과 의사가 작성하도록 한다.
 - ii. DOHMH 에서는 시력검사를 받지 않은 유아원, 유치원 및 1학년 학생의 명단을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 iii. DOHMH 에서 시력검사를 실시할 경우, 학부모에게 후속조치를 통보할

책임은 DOHMH에 있다.

2. 청력 검사

- a. 학생에게 학교 생활에 지장을 줄만한 청력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사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청력검사를 권고할 수 있다.

III. 필수 예방접종

- A. 예방접종 요건 -뉴욕주 공중보건법(PHL) §2164에서는 뉴욕주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아마비,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풍진, 뇌수막염, B형 간염, 수두 및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예방접종을 필수로 요구한다.

1. 기록 보관

예방접종 기록은 반드시 학교에 의해 ATS에 입력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반드시 학생의 모든 필수 예방접종 기록을 누적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는 예방접종 증명, 예외인정 요청서 및 이러한 예외인정 요청의 결과까지 모두 포함된다.

2. 신규 입학생 대상 임시 예방접종 요건

a. 신규

입학생은

<http://schools.nyc.gov/Offices/Health/ImmunizationInfo/default.htm>에 규정된 임시 예방접종 요건을 준수했다는 문서상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학교에 등록은 가능하나 등교할 수는 없다. 학생이 등교에 필요한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대리인은 반드시 학부모에게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가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녀를 등교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이러한 요건을 통지하는 경고서를 반드시 학부모에게 발송한다. 정해진 14일 이내에도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학부모에게 학교 등교금지 통보서를 발송한다. 학생이 등교 금지되었을 경우, 학생의 결석 사유로는 출석코드 17을 입력한다. 학생이 예방접종을 하였다든 약간의 증거가 있을 경우, 학교장은 타주 또는 타도시에서 온 학생에게 최대 30일까지(여기에는 상기 설명한 14일간의 유예기간도 포함) 등교를 허용할 수 있다. 면허증을 소지한 의사로부터의 서면상의 예방접종 확인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학교에 절대 등교할 수 없다.

- b. 매키니-벤토법(McKinney-Vento Act)에 의거하여, 홈리스 학생의 학교 입학은 예방접종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될 수 없다. 학교는 반드시 학부모가 필요한 서류를 입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이 예방접종 증명이 없을 경우, 학교는 학생이 필요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 만일 학생이 예방접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생은 상기 설명된 절차에 따라 등교가 거부될 수 있다.

3. 종합 예방접종 요건

a. 요구되는 특정 예방접종

18세까지 학생의 예방접종 요건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schools.nyc.gov/NR/ronlyres/26D35D93-81EC-4175-ACAC-A06B13120F48/62345/MedReq2009.pdf>

- b. 학생은 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예방접종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해야 한다. ATS 시스템은 임시 입학 허가를 받은 후 예방접종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기록에 자동적으로 경고표시(flag)를 하게 된다.

- c. 상기 명시된 예방접종 요건은 18세 이상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도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CIP)에서 추천한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접종할 것이 강력히 권고된다.

4. 예방접종 요건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

뉴욕주 공중 보건법(PHL) § 2164 및 뉴욕시 보건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료 또는 종교상의 이유로 필수 예방접종에서 예외를 허용한다:

a. 의료적 예외

뉴욕주 면허를 소지한 의사나 간호사가 서명한, 특정 백신(들)을 접종하면 안되는 의학적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학부모가 제출할 경우,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제출한 예외 요청서를 ISC 보건디렉터에게 전송하고, 보건디렉터는 이를 DOHMH에 제출한다. DOHMH 소속 학교 보건은 이를 검토한 후에 예외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한다. 이러한 필수 예방접종 예외 요청서는 매년 갱신해야 한다. 의사 소견서는 학생의 학교 건강 기록에 첨부되어야 하며, 예외요청 및 승인 내용은 ATS에 입력되어야 한다.

b. 종교상의 예외

i.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신들의 "진정하고 거짓 없는 종교적 신념"에 근거하여 예방접종 요건으로부터의 예외를 요청할 수 있다.

ii. 절차

학부모는 반드시 예방접종 요건으로부터의 예외를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이 편지를 ISC 보건 디렉터에게 전달하고, 보건디렉터는 이 편지를 다시 중앙 OSH, 49-51 Chambers Street, Room 600로 제출한다. OSH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한 뒤 결과를 해당 학부모와 학교장 및 ISC 보건 디렉터에게 통보한다. 학생은 이 초기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학교에 등교할 수 있다.

만일 예외 요청이 거부될 경우, 학부모는 거부 통지서를 수신한지 10일(수업일) 이내에 ISC 보건디렉터와의 면담을 요청함으로써 해당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면담시 학부모는 자신의 예외 요청 사유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추가로 제시할 기회가 있다. OSH는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OSH에서는 종교상의 사유로 요청된 모든 예방접종 제외에 관한 승인을 ATS에 입력하고 각 요청에 관한 내용을 영구보존한다. 학생은 이의제기 기간 동안 학교에 등교할 수 있다.

c.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 유행하는 동안의 예외

i. DOHMH에서는 어떤 학생이 의료상의 또는 종교상의 이유로 필수 예방접종 요건에서 예외를 승인 받은 이후,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이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예, 수두, 홍역, 볼거리 등)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예방접종 예외를 승인 받은 학생의 등교를 금지시킬 수 있다.

ii. 이러한 등교금지는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에 걸린 학생이 더 이상 전염성이 없다고 판단된 지 최대 삼(3)주까지 지속될 수 있다.

5. 뉴욕주 교육 커미셔너에게 이의제기

예방접종 요건 미비나 예방접종 예외 요청 거부로 인해 등교 거부된 학생의 학부모, 보호자, 또는 학생과 부모관계에 있는 사람은 뉴욕주 교육법 제 310.6-a항의 조항에 의거하여 교육 커미셔너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은 이러한 이의제기

기간 동안 학교에 등교할 수 없다.

IV. 결핵 검사

A. 뉴욕시 중등학교에 처음 등교하는 학생은 반드시 망투 결핵 피부반응 검사 (일명 PPD)를 받아 48 - 72시간 이내 판별한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피부반응 검사 외에 학계에서 승인된 혈액검사 방식으로 결핵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1. 망투 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승인된 혈액검사를 통한 결핵검사 결과 역시 <http://schools.nyc.gov/Offices/Health/TuberculosisTesting/default.htm>에 의거하여 날짜에 관계 없이 제출 가능하다. 또한 예전에 실시한 망투 검사 양성결과와 더불어 일반적인 흉부 X-레이 역시 날짜에 관계 없이 제출 가능하다. 음성인 결핵반응 검사 결과는 학교 입학 전 1년 이내, 또는 학교 입학 후 14일 이내에 실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BCG 백신을 접종한 전력이 있는 학생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양성인 망투 검사 결과는 MMR 또는 수두 접종이 실시된 지 4주 이내의 것이라도 유효하다. 그러나 음성 결과는 임상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따라서 MMR이나 수두 접종이 실시된 후 1일에서 28일 사이에 실시된 검사는 제출할 수 없다. 학생은 임상적으로 무효한 망투 검사가 실시된 4주간의 기간 동안 학교에 등교할 수 있다.

B. 망투 반응검사 결과 양성인 학생들은 14일 이내에 건강검진 및 흉부 X-레이를 촬영해야 하나, 이 기간 동안 학생의 PPD를 실시하고 결과를 판독하는 의료진이 달리 결정하지 않은 한 학교에 등교할 수 있다.

C. 결핵 반응 검사가 MMR 접종과 같은 날, 혹은 그 이전에 실시되지 않은 경우, 학생은 반드시 육(6)주가 경과한 뒤 결핵반응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핵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은 학교에 출석할 수 있다.

D. 등교 금지

입학 허가 후 상기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학생은 등교금지 경고를 받게 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등교가 금지된다: 1) 상기 절차에 의거하여, 또는 등교금지 경고문을 받은 지 14 수업일 이내에 실시된 결핵반응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2) 결핵반응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보인 신입생으로서 14수업일 이내에 흉부 X-레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E. 예외

의료 및 종교적 사유로 인한 예방접종 예외(본 규정 제 III.A.4항 및 5항 참조) 사항은 본 결핵반응 검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V. 투약 및 편의제공

A. 휴대용 에피네프린(Epi-Pen)

전체 학생의 약 1% 정도는 특정 음식(특히 땅콩이나 기타 견과류)섭취나 곤충에 물렸을 때 매우 심각한(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이러한 알레르기 반응은 주입식 에피네프린(Epi-pen 형태)으로 가장 잘 완화될 수 있다. DOHMH에서는 의무실에 Epi-pen을 구비하여 비상시 의무실 직원이 투약할 수 있도록 한다. OSH 에서는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담당할 교사와 보조교사, 그리고 기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필요시 Epi-pen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관련 내용은 교육감 규정 A-715 참조.

B. 기타 약물

1. 학생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경우, 학교 내에서 투약할 수 있다. 교내에서 일과 시간 중에 투약하기 위해서는 뉴욕, 뉴저지 또는 커넥티컷에서 처방전 발행 면허를 소지한 의료진(의사, 간호사, 또는 의사가 승인한 의료보조인)이 직접 작성한 투약 요청서("MAF")에 해당 약물을 처방해야 한다. 본 양식은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나 교육청에 요청하여 얻을 수 있다. MAF의 내용에 변화가 발생할 때에는 반드시 면허가 있는 의료진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MAF는 매 학년도 초에 제출해야 한다.

2. 모든 약물은 반드시 본래의 용기에 담겨진 채 인편으로 직접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교 양호교사 또는 학교장/지명자는 약물을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이나 냉장고에 보관한다. 양호교사 또는 기타 지명자는 교내에서 투약을 허가 받은 각 학생에 대해 투약일지(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은 MAF에 의사와 학부모가 승인한 경우, 자가투약을 할 수 있다.
3. 학생은 투약 외에도 1973년 제정된 장애인 재활법의 제 504항에 의거, 각종 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절차는 교육감 규정 A-710 참조.

VI. 응급 의료 상황

A. 비상 가정 연락 정보

비상 연락 정보는 반드시 학생 개인의 ATS 파일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며 일명 블루카드로 부르는 비상 가정 연락 카드에도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뉴욕시 보건법 § 45.19 참조). 블루카드는 학생의 입학과 동시에 작성되어 매 학년도마다, 또는 필요할 때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B. 응급 처치

1. 학생이 다치거나 아프게 되어 즉각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할 경우, 학교장이 응급 의료 조치를 주선한 후 학부모에게 연락한다 (뉴욕시 보건법 § 49.15 참조). 교내에서 실시되는 응급처치는 학생의 즉각적인 구급치료에만 국한된다.
2. 교내에서 실시된 구급치료의 범위를 넘어선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 때에는 반드시 911에 전화한다. 학교장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반드시 911에 전화한 사실을 통보한다. 앰블런스가 도착했을 때 학부모가 없을 경우 학교장은 반드시 학생과 앰블런스에 동승할 사람을 지정해야 하며, 이 사람은 부모가 도착할 때까지, 혹은 그 날 일과가 끝날 때까지 학생 곁을 지켜야 한다. 이 동승자가 부모가 도착하기 전에 병원을 떠나야 할 경우, 그는 반드시 학교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측과 협의하여 병원이 학생을 보호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3. 응급처치를 실시함에 있어 감염 가능한 질병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전반적이고 상식적인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C. 자동 심장 제세동기(AEDs)

1. 모든 학교에는 최소 1대 이상의 자동 심장 제세동기("AED")를 구비,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AED 사용법과 심폐소생술("CPR")이 가능하도록 훈련 받은 사람이 모든 학교 주최 또는 후원 행사나 학교에서 승인한 교과 또는 과외 행사나 활동시 반드시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학교는 장소나 시간에 관계 없이 학교에서 주최 또는 후원하는 모든 체육행사에 AED를 비치하고 훈련 받은 AED/CPR 전문가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견학에 AED를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공립학교 시설과 교직원들은 "대민 심장 제세동기 제공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공중보건법 ("PHL") § 3000 (a), (b), (c)에 의거한 요건과 제한, 책임이 있다. 학교장은 본 규정에 의거하여 교내에서 AED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것의 사용법을 알고 있으며 CPR이 가능한 직원을 자신의 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 시 상주시킬 책임이 있다. OSH 직원(AED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교육청과 계약을 맺은)은 AED 배치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AED 작동유무를 검사하며, 교직원을 상대로 지속적인 훈련을 제공한다.
3. AED 요건에 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한다:

<http://www.p12.nysed.gov/sss/schoolhealth/schoolhealthservices/Article19Sections.html>.

D. 심폐 소생 거부("DNR") 명령

부모는 자녀의 학교장에게 병원 외에서의 DNR 명령을 교육청이 수락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은 본 요청을 OSH에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OSH에서는 교육청 법률 서비스 담당실과 협의하여 결정을 내린 후 학교장 및 기타 관련 교직원에게 이 내용을 알린다.

VII. 교내 의료 시설

A. 보건담당 직원을 위한 학교 시설

1. 의무실

각 학교는 안전과 프라이버시, 의료기밀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의무실을 구비해야 한다:

- 적절한 크기 (일반적으로 최소 200 평방피트)
- 냉수와 온수가 모두 공급되는 싱크 설치
- 바닥에서 천장까지 이어진 벽
- 지나다니는 통로 역할을 하지 않는 곳
- 전화 설치
- 인터넷 연결 가능

이 밖에도 별도의 학생 대기실, 학생 화장실이 가까이 있을 것, 적절한 난방, 조명, 환기, 교내에서 적절한 장소에 위치할 것 등이 포함된다.

B. 교내 보건 센터

- 교내 보건센터("SBHC")는 부모가 본 센터에 등록 패키지를 제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차적, 예방차원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SBHC의 의료 기록은 Article 28 제공자로서의 SBHC 소유이다. SBHC는 반드시 뉴욕주 보건부 ("NYSDOH")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내 보건 센터 설립 절차

뉴욕주 내에 SBHC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신청서를 완성하여 NYSDOH의 아동 및 청소년 건강국(Bureau of Child and Adolescent Health)에 제출한다. OSH로부터 양해각서("MOU")를 취득한다. MOU의 첨부 F, "학교 정보 & 승인 양식(School Information & Approval Form)", 그리고 Empowerment Schools의 경우 첨부 F-2, "School Information & Approval Form-Empowerment Schools"에 관련 당국의 서명을 받는다. 교육감 대리인으로서의 OSH 디렉터와 의료서비스 제공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증 받음으로써 MOU를 시행한다. 끝으로, 완전히 서명된 MOU 사본을 설립 신청서와 함께 NYSDOH에 제출한다. NYSDOH에서는 SBHC 시설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어느 학교의 어느 SBHC도 NYSDOH의 아동 및 청소년 건강국과 교육청의 승인 이전에 서비스를 개시할 수 없다. 완성되고 승인된 신청서 사본을 교육청에 제출할 때에는 다음 주소로 우송한다: Manager of School-Based Health Centers, Office of School Health, 49-51 Chambers Street, Room 600, New York, NY 10007.

VIII. 기타 학교 보건 프로젝트

학교 보건 프로그램은 보건 서비스나 건강 홍보 활동 등을 제공하는 학교 보건 프로젝트로 보강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제안서는 교육청 직원, 기타 행정부처, 또는 민간 단체 등이

시작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특수 기본 검사, 보건 정보나 팸플릿, 기타 유사 자료 배포, 또는 학생 기록 또는 질문지를 통한 데이터 수집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학부모 동의서가 필요하다.

OSH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프로젝트를 검토 후 승인해야 한다. 프로젝트에 연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교육청 산하 평가 및 책임부 제안 검토 위원회(Division of Assessment and Accountability Proposal Review Committee)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 가이드라인에 관한 추가 정보는 평가 및 책임부, 연구 및 정책 지원실(Division of Assessment and Accountability, Research and Policy Support, NYC Department of Education, 52 Chambers Street, New York, NY, 10007)에 요청한다.

프로젝트 종료 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관련부서에 제출한다.

IX. 문의

본 규정서에 관한 질문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u>전화:</u> 718-391-8116	학교 보건 담당실 N.Y.C. Department of Education 28-11 Queens Plaza North – Room 402 LIC, NY 11101	<u>팩스:</u> 718-391-8128
----------------------------	---	----------------------------